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 의무화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556)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5).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5(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¹⁾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

1)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및 자립지원 이외에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등은 없는 실정임.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화적 배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²⁾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국민 전체의 인식전환 없이는 실질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의 제고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반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부터 관련 교육을 받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할 것인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일교육 지원법」³⁾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해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은 내용과 범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이 통일교육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별개의 법정 교육으로 정하기 전에 기존의 교육 내용에 북한

2) 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5.7.14. 참조

3)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취약계층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교육 유사 입법례 〉

법률명	일반인 대상 교육	업무종사자 대상 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없 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없 음)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의무교육 추가에 따른 교육 실시 의무자 및 피교육자의 피로도·거부감 등으로 교육효과의 저감이 우려되고,⁴⁾ 「초·중등교육법」⁵⁾상 의무교육 변경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여 선행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반영토록하는 것은 교육자치제도 취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 등을 고려하여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교육과 관련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법률 제26637호,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보건교육 17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11시간, 장애인식 개선교육 2시간, 다문화 이해교육 2시간 등과 같이 소관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 의무교육이 너무나 과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케 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충권의원안 (의안번호 8164)	송옥주의원안 (의안번호 8556)	송재봉의원안 (의안번호 10919)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직원 등에게 <u>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이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u>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u>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의5).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고용 노력 대상을 확대 하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u>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문 의 처
02)6788-5267